

교직원상조회 경조 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1 | 2007.03.01 | | 16 | | |
| 2 | 2012.05.01 | | 17 | | |
| 3 | 2016.12.09 | | 18 | | |
| 4 | 2020.06.01 | | 19 | | |
| 5 | 2022.07.11 | | 20 | | |
| 6 | 2024.03.25 | | 21 | | |
| 7 | | | 22 | | |
| 8 | | | 23 | | |
| 9 | | | 24 | | |
| 10 | | | 25 | | |
| 11 | | | 26 | | |
| 12 | | | 27 | | |
| 13 | | | 28 | | |
| 14 | | | 29 | | |
| 15 | | | 30 | | |

교직원상조회 경조 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 (적용범위)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 상조회 회원(이하 '회원'이라 한다)에 대한 각종 경조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24.03.25.>

제2조 (경조보조금) ① 신입회원은 회비납부 익일부터 경조보조금 수령의 자격을 가진다.
② 회원에 대한 경조보조금의 종류, 구분 및 금액은 [별표 1]에 의한다.
③ [별표 1]의 경조 보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 삭제 <개정 2024.03.25.>

제4조 (대여금) ① 회원은 [별표 1]의 기준에 따라 대여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, 별도로 정한 약정에 의하여 상환한다.
② [별표 1]에서 정한 대여기준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③ [별표 1]에서 정한 대여한도는 초과할 수 없으며, 회원의 대출상황 등에 따라 이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5조 삭제

제6조 (기금 운영 및 관리) ① 상조회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1. 상조회 기금 : 경조보조금, 대여금 지급 <개정 2024.03.25.>
2. 삭제
② 상조회 기금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.
1. 상조회 기금 운영위원 : 상조회 회칙 제4조에서 정한 임원
2. 삭제

제7조 삭제

제8조 (경조보조금 등의 청구) ① 회원은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거 경조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유 발생일을 전후하여 그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03.25.>
② 전 항의 경조보조금은 청구 통지에 의하여 지급 의무를 가지며,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단,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 <개정 2024.03.25.>

제9조 (수령자) ① 경조보조금의 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<개정 2024.03.25.>

1. 축의금 : 회원
 2. 조위금 : 회원 또는 유족 대표
 3. 삭제 <개정 2024.03.25.>
 4. 삭제
- ② 유족에 대한 순위는 공무원연금법 지급 순위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<개정 2024. 3. 25>

상조회 사업운영 내역

| 구 분 |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1. 개인별 가입금 | | - | 찬조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회원 가입 당시의 자산을 회원수로 환산하여 산정 |
| 2. 1인당 회비 | | 월 10,000원 | |
| 3. 1인당 대출 한도액 | | 5,000,000원 | 기 대여금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여 가능 (대출이자 연 4%) |
| 4. 대출 원금상환 | | 일시 및 월 50,000원 이상 | 상환기간 · 2,000,000원 초과 ~ 5,000,000원 이하 : 24개월 이내 · 2,000,000원 이하 : 12개월 이내 |
| 5. 축의금 | 본인 결혼 | 550,000원 | |
| | 회원 직계자녀 결혼 | 350,000원 | |
| | 회원 회갑 | 500,000원 | 회갑 전 정년(명예) 퇴직자는 전별금으로 대체(500,000원) |
| | 부모 회갑 | 300,000원 | |
| 6. 조위금 | 회원 사망 | 1,550,000원 | |
| | 회원 배우자 사망 | 750,000원 | |
| | 부모 및 자녀 사망 | 550,000원 | |
| | 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| 350,000원 | |
| 7. 상조물품지원비 | | 100,000원 | 조위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|
| 8. 삭제<2024.03.25.> | | - | - |
| 9. 삭제<2016.12.09> | | - | |
| 10. 퇴직기념품 | | 3년 이상~10년 미만 : 500,000원 10년 이상~20년 미만 : 1,000,000원 20년 이상~30년 미만 : 1,500,000원 30년 이상 : 2,000,000원 | ·지급기준: 정년 또는 명예퇴직 회원에게 지급 <개정 2024.03.25.> ·산정기간: 상조회 가입 기간 |
| | 삭제 | 삭제 | |
| 11. 삭제 | | - | 삭제 |

<별표 2> 삭제